

대학원 규정

제정 : 2003. 12. 01.
 전면개정 : 2016. 03. 01.
 개정 : 2016. 08. 05.
 개정 : 2017. 08. 11.
 개정 : 2017. 12. 08.
 개정 : 2018. 02. 09.
 개정 : 2018. 06. 01.
 개정 : 2019. 01. 11.
 개정 : 2020. 05. 08.
 개정 : 2021. 02. 05.
 개정 : 2022. 01. 07.
 개정 : 2022. 08. 05.
 개정 : 2023. 01. 06.
 개정 : 2024. 01. 05.
 개정 : 2024. 05. 03.

담당 : 대학원 교학팀(02-950-5456)

----- 목 차 -----

제1조(목적)	제2조(교육조직)	제3조(과정)	제4조(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제5조(입학시기)	제6조(입학지원자격)	제7조(입학지원절차)	제8조(입학지원서류)
제9조(입학전형)	제10조(입학허가)	제11조(사정원칙)	제12조(입학등록)
제13조(입학 전공분야)	제14조(편입학)	제15조(재입학)	제16조(휴학)
제17조(복학)	제18조(자퇴)	제19조(제적)	제20조(등록의 종류)
제21조(등록)	제22조(등록 및 반환)	제23조(등록생의 권한)	제24조(수업연한·재학연한)
제25조(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제26조(교과과정)	제27조(수료 및 학점인정)	제28조(학기당 이수학점)
제29조(학업평가)	제30조(이수인정의 평점)	제31조(수강과목의 철회)	제32조(신앙훈련)
제33조(교과목 이수)	제34조(교과목 개설 절차)	제35조(교과목 담당교수)	제36조(보충과목)
제37조(보충과목 지정 및 수강절차)	제38조 (논문세미나 수강)	제39조(수강신청)	제40조(재수강)
제41조(출·결석)	제42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과목 연계)		제43조(본 대학교 대학원 간 이수학점)
제44조(타 대학교 대학원 이수학점)	제45조(학점교류)	제46조(편입 학생의 전적교 이수학점)	제47조(적용대상)
제48조(교류형태)	제49조(자격, 수강, 학점인정 등)	제50조(교류이수학점)	제51조(외국어시험)

제52조(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제53조(시험과목)	제54조(출제위원)	제55조(응시료)
제56조(외국어검정시험)	제57조(합격기준)	제58조(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제59조(시험과목)
제60조(출제위원)	제61조(응시료)	제62조(논문제출 연한)	제63조(논문제출 자격)
제64조(논문지도교수)	제65조(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제65조의2(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제66조(논문작성)
제66조의2(연구윤리)	제67조(논문제출)	제68조(학위청구논문 심사)	제69조(논문심사위원회)
제70조(논문심사 절차)	제71조	제72조(논문심사 판정)	제73조(심사보고)
제74조(재심사)	제75조(합격된 논문의 제출)	제76조(논문 체제)	제77조(학위수여 및 종별)
제78조(학위논문의 공표)	제79조(학위수여의 취소)	제80조(학위수여)	제81조(학위수여자 사정)
제82조(학위수여)	제83조(학생지도)	제84조(포상 및 징계)	제85조(징계)
제86조(장학금)	제87조(지급정지 및 취소)	제88조(신청자격의 제한)	제89조(수혜기간)
제90조(공개강좌)	제91조(연구과정 및 연구생)	제91조의2(산학교류연구생)	제93조(직제)
제94조(주임, 지도교수)	제95조(대학원위원회)	제96조(대학원운영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성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에 두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이하 “각 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조직) 본 대학교에는 학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신학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이하 “각 특수대학원”이라 한다)(개정24.01.05)

제3조(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라 한다),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4.05.03)

-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둔다.
- ③ 각 대학원은 교육목표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위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학칙 제3조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대한민국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③ 총장은 전 제1항의 입학정원 내에서 특수대학원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입학·편입학·재입학

- 제5조(입학시기)** ① 각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로 한다.(개정17.12.08)
 ② 재입학 및 외국대학으로부터의 전·편입학을 포함한 모든 전·편입학은 매 학기 개시일 21일 이내로 한다.
 (개정17.12.08)

제6조(입학지원자격) ①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학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Th.M 지원자 및 신학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지원자는 M.Div.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신학대학원 특별전형 지원자(개정 21.02.05)
 - 1) 무시험전형추천자 : 학부 본교 학부 성적 우수 자
 - 2) 국내, 외 대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단, 명예박사 및 비학문성 학위는 인정하지 아니함).
 - 3) 공무원 경력자 :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5급 이상 외교관,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 기관의 임원(부장급 이상), 군 경력자(중령급 이상) 등
 - 4) 전문인 : 변호사, 의사, 사회단체 대표, 언론인(부장급 이상), 기타 각 분야의 전문인 및 유명인사
- 5) 교육계 경력자(교육부 및 교육청인가)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교육감, 각급 학교장 및 교감
- 6) 재외국민 자녀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며 4년제 정규대학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7) 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4년제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8)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었거나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선교단체 중 본교가 추구하는 신학적 정체성에 부합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현지에서 6년 이상 선교사역에 헌신한 자 또는 6년 이상 선교단체에서 전임사역에 헌신한 자

② 박사과정의 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특별전형 지원자(개정 21.02.05)
 - 1) 전문인 : 국가공인연구소나 동일 직종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2) 교육계 경력자(교육부) : 대학(전문대학 포함) 조교수 이상인 자
 - 3) 국내, 외 대학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단, 명예박사 및 비학문성 학위는 인정하지 아니함)
 4.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학을 허용하되, 재학기간 동안 휴직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정 : 학사학위소지자

④ 편입학(석·박사과정) : 학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제7조(입학지원절차) 입학지원자는 각 대학원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학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지원서류) 각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대학 전(준)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라. 자기소개서 1부
- 마. 담임목사 추천서(M. Div과정에 한함) 1부.
- 바. 삭제(개정17.12.08)
- 사. 기타 필요한 서류

2. 박사과정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나. 석사학위(예정) 증명서 1부
- 다. 대학 및 대학원 전(준)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라. 삭제(개정17.12.08)
- 마. 자기소개서 1부
- 바. 삭제(개정17.12.08)
- 사. 기타 필요한 서류

3. 편입학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나. 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 다. 대학원 재학(재적) 증명서 1부
- 라. 대학 및 대학원 전(준)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마. 삭제(개정17.12.08)
- 사.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각 대학원 입학전형은 매년 2회 정시전형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결원에 대해 수시로 선발하는 수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입학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 면접으로 구성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달리할 수 있다.

④ 석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면접으로 입학전형을 행한다. 단, 각 대학원별로 필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⑤ 박사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입학전형을 행한다.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으로 하며,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에 의하여 입학전형을 행한다.

⑥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고, 별도의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⑦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대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입학전형위원들이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전공과정에 대한 구술시험과 면접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행한다.

제10조(입학허가) 원장은 서류심사, 구술 또는 필기시험과 면접의 결과를 기초로 사정자료를 작성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1조(사정원칙) 사정원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입학등록) ① 입학이 확정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입학등록을 완료한 자는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학생의 신분을 갖는다.

제13조(입학 전공분야) ① 각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자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일반대학원 간호학 석사과정은 동일 전공이어야 한다(개정 22.01.07).

② 일반대학원 통합과정 지원자의 전공분야는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이어야 한다. 단 일반대학원 기독교상담심리학 전공은 전공분야와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2.01.07).

③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지원자의 전공분야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이어야 한다.

제14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각 학위과정의 지원전공분야와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하며, 전공분야의 유사 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재입학) ①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17.12.08)

②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일 내에 재입학원을 해당 대학원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④ 재입학자가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⑤ 재입학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또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있어서 재입학 전의 재학기간은 산입하나 제적기간은 제외한다.

⑥ 재입학자의 이전 합격한 자격시험(외국어·종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자격시험 합격 후 경과 년수를 고려하여 해당 대학원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⑦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재입학 허가자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등록

제16조(휴학) ①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휴학기간은 학칙 제25조에 따라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2회를, 석·박사 통합과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 육아(임신, 출산), 창업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예외로 한다.(개정18.06.01)

③ 군복무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병역의무기간 동안 계속 휴학이 인정된다.

④ 휴학기간은 재학연한 및 학위논문 제출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휴학 시에는 등록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휴학을 원하는 자는 당해 학기 소정 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등록금을 납입한 후 휴학원을 제출하는 자의 등록금은 제22조에 따라 반환하거나, 복학 학기 등록금

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20.05.08)

제17조(복학) ① 복학하는 자는 학기 시작 후 2주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하는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복학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제적 처리한다.

1.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4. 재학연한 내에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자
5.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C(2.0) 미만인 자(개정18.02.09)

제20조(등록의 종류) 학생의 등록은 정규등록, 입학(편입학, 재입학)등록, 논문등록, 연구생등록 및 기타로 구분한다.

제21조(등록) ① 각 대학원의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학생은 4학기, 박사과정 학생은 6학기, 통합과정 학생은 8학기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특수대학원의 경우 신학대학원 학생은 6학기, 교육대학원은 5학기, 사회복지대학원의 학생은 4학기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후에도 학점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에는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을,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을, 7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수업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학대학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개정17.12.08)(개정24.01.05)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마지막 학기 등록금의 6분의1(개정17.12.08)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마지막 학기 등록금의 3분의1(개정17.12.08)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마지막 학기 등록금의 2분의1(개정17.12.08)
4. 10학점 이상은 마지막 학기 등록금 전액(개정17.12.08)

③ 전항의 단서조항 이 외의 경우에는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재입학한 학생의 제적 전 등록 학기는 정규등록 학기에 포함하여 인정한다.

⑤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원에 따라 학위취득 시까지 매 학기마다 매 학기 수업료의 10분의1 해당액의 논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연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두 학기 연구생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생등록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2조(등록 및 반환)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이를 반환치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입학 또는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 처리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개정 2020.05.08)
 7.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개정 2020.05.08)
- ③ 등록금 반환금액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
 2.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3.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5.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단, 전 2,3,4,5호의 경우 입학금을 제외한다.

제23조(등록생의 권한) ①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② 논문등록을 한 학생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수업연한·재학연한, 교과과정, 학점, 성적

제24조(수업연한·재학연한) ①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일반대학원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신학대학원은 3년, 기타대학원은 2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학위과정재학연한에 대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연구과정의 연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신학대학원(M.Div)과 일반대학원(Th.M) 연계과정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22.01.07)

⑧ 일반 대학원 신학전공(Th.M)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신설24.05.03)

제25조(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매 학기 15주 이상) 한다.

② 일반대학원은 주간에, 특수대학원은 야간에 수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교과과정) ① 교과과정은 원장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교과과정의 세부사항은 편람으로 따로 정한다.

② 석사과정에 학부·대학원 연계 교과목을 둘 수 있으며, 연계 교과목은 공동개설 및 공동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수료 및 학점인정) ① 수료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학칙 제 43조 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의 석사(M.A)과정은 27학점, 연계신학전공(Th.M)과정은 18학점, 석사(M.SN)과정은 30~33학점, 박사과정은 36학점, 통합과정은 54학점으로 하고, 신학대학원은 90학점, 사회복지대학원은 30학점, 교육대학원은 38학점으로 한다.(개정19.01.11)(개정22.01.07)(개정24.01.05)(개정24.05.03)

② 통합과정에서 2년 이상 등록하고 27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며, 4년 이상 등록하고 총 54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개정19.01.11)

③ 하위과정과 전공이 다른 자로서 보충과목 이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 제1항이 정하는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12학점 이내)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타 학과(전공)에서 이수한 학점
2. 박사과정 학생이 입학 전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3. 학부·대학원 연계 교과목을 이수한 학점
4. 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 학점
5. 재입학생의 제적 전 이수 학점
6. 본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7. 입학 전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8. 학점교류에 의해 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⑤ 수료생은 재학생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 관리한다.(신설17.08.11)

⑥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9학점까지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1.02.05)

제28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학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일반대학원의 학기당 이수학점은 매 학기 9학점 이내로 하되, 신학대학원은 18학점, 사회복지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 단, 대학원장 허가 시 초과취득이 가능하다.(개정24.01.05)

② 석사과정 학생으로 본 대학원이 학부와 공동 개설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 학생은 학기당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제29조(학업평가)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점수 및 평점은 학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등급	점수	평점
A+	100~98	4.0	A	97~93	3.85	A-	92~90	3.5
B+	89~87	3.3	B	86~83	3.0	B-	82~80	2.7
C+	79~77	2.3	C	76~73	2.0	C-	72~70	1.7
F	69이하	0		Pass/Non pass				

제30조(이수인정의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 실시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평점 2.0)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그러나 각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은 B(평점 3.0) 이상이어야 한다.

- 제31조(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지도교수,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수강과목 철회 후의 잔여신청과목의 최저과목은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 (Withdraw)로 표기된다.
- ④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 (신설 21.02.05)

제5장 교과과정의 개설 및 이수

제32조(신앙훈련) 각 대학원의 학생은 수료의 조건으로 해당 학점 이외에 신앙훈련(채플, 개강수련회, 밀알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① 채플(경건훈련)
1. 신학대학원: 주 2회 참석하여야 하며, 총 참석일수(32회)의 75%(2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단 신학대학원생의 경우 목요기도회 참석을 경건훈련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교육대학원: 주 1회 참석하여야 하며, 총 참석일수(16회)의 75%(1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개정24.01.05)
 3. 학부 채플참석은 주 1회만 인정한다.
 4. 지각 3회는 1회 결석처리 한다.
 5. 경건훈련 미이수자는 방학 중 미 참석횟수의 시간에 해당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 경건훈련을 Pass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해당학생이 부담한다.
- ② 개강수련회(F.T): 봄 학기에 실시되는 개강수련회에 참석해야 한다. 출결은 해당 주간 과목에 반영한다.
- ③ 밀알훈련: 신입생 및 편입생은 밀알훈련에 참석하여 이수해야 한다. 다만, 본 대학교 출신으로 밀알훈련을 이수한 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제33조(교과목 이수) ① 각 대학원의 이수학점은 학칙 제43조 제2항에 따르며, 과목당 학점은 1과목 3학점(신학대학원은 2학점 또는 3학점)을 원칙으로 하고, 학점당 수업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② 각 대학원의 교과목 이수에 대해서는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람에 따른다.

제34조(교과목 개설 절차) ① 원장은 해당 대학원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교과과정 편성표를 작성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을 설정한다.

② 교과목은 각 대학원의 학문수준과 해당 전공부문의 학문적 체계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공통필수, 공통선택,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③ 원장은 설정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 개설 교과목을 각 대학원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학기 개시 최소 2개월 전까지 개설과목을 결정한다.

제35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교내·외의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3. 박사학위 취득 후 강의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4. 기타 원장이 인정한 자

제36조(보충과목) ① 원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2학점까지 보충과목 이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입학 전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대학원 주임교수가 보충과목으로 인정하는 교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1. 하위과정의 전공과 다른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 해당 대학원 주임교수에 의해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② 보충과목의 취득성적은 C학점 이상을 인정한다. 다만,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7조(보충과목 지정 및 수강절차) ① 보충과목의 이수가 요구되는 자는 대학원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원장이 지정하는 보충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해당자는 수강신청기간 중에 보충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이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할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각 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은 보충과목은 학부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38조 (논문세미나 수강) ① 일반 대학원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지도교과목인 논문세미나를 석사학위과정(논문작성자)은 1학기(3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2학기(6학점) 수강하여야 한다.(개정19.01.11)

- ② 특수대학원의 학생 가운데 논문제출자는 논문세미나(6학점 이수)를 수강해야 한다.
- ③ 논문세미나 이수 후 논문학기에 등록된 학생은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해야한다. 단, 이 경우의 논문지도과목에 대하여는 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개정19.01.11)

제39조(수강신청) ①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강과목의 정정은 개강 후 수강신청정정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제40조(재수강) ① 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동일과목으로 재수강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 과목이 해당 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재수강한 교과목에 대한 성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전 취득한 학점은 말소된다.
- ③ 재수강은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범위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출·결석) ① 매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여야 학기말 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경건회 시간도 이에 준함.)

- ② 결석인정 범위는 직계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고일수는 부모상 7일, 조부모상 5일, 형제자매상 3일, 병관계 2주(이상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에 의함)까지로 하며, 결석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결석계 승인 후 해당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재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위 제2항에 의하여 결석하는 경우 담당교수는 출석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각 결석계를 출석부와 더불어 보관 후 매 학기말 교학처에 출석부와 더불어 제출한다.
- ④ 수강신청 없이 취득한 학점은 무효이며, 수강신청을 했을지라도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완납

시까지 결석처리 할 수 있다.

⑤ 공무출장으로 인한 결석자는 기관장 발행의 증명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회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인정기간은 통산하여 3주 이내로 한다.(신설 21.02.05)

제6장 학점인정

제42조(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과목 연계) ① 학칙 제44조의2에 따라 학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4학년에 한하여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 중 최대 6학점까지 학사학위과정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학사학위과정 졸업 및 수료에 인정받지 않은 학점 중 최대 6학점까지 본 대학원에 입학 시 기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헬라어, 히브리어 과목에 대해서는 학부에서 각 과목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면제 신청을 통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신설24.05.03)

제43조(본 대학교 대학원 간 이수학점) 입학 전 본 대학교의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소속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타 대학교 대학원 이수학점) ① 입학 전 타 대학교 대학원(국내·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6학점까지 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학점은 A, B인 것에 한하여 그 성적을 그대로 인정한다.(개정17.12.08)

제45조(학점교류) 타 대학교 대학원 학점교류 협약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6조(편입학생의 전적교 이수학점) ① 일반대학원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본 일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 편입학생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장 학점교류

제47조(적용대상) 학점교류협약을 체결한 타 대학교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대상으로 한다.

제48조(교류형태) 타 대학원과의 학점교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학기 중 수강한 학점교류
2. 방학 중의 계절학기 강좌를 수강한 학점교류

제49조(자격, 수강, 학점인정 등) 학점교류에 관한 이수자격, 수강, 학점인정 및 행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교류이수학점) 국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3학점, 총 9학점까지로 한다.

제8장 외국어시험

제51조(외국어시험) ① 학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학생과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영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성서학 전공자는 성서 언어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그 외의 전공은 필요에 따라 제2 외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인된 어학능력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거나,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항의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52조(시험시기 및 응시횟수) ① 외국어시험은 재학 중 원하는 시기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하되, 그 일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다.

제53조(시험과목)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개정22.08.05.)

제54조(출제위원) 외국어시험의 출제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제55조(응시료) 외국어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외국어검정시험) ① 대학원에서 개설한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본 과목의 이수는 각 과정의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개설과목은 외국어시험에 응시(결시 제외)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고, 최소 48시간 이상 강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강좌개설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면제: 토익 600점 이상, 토픽스 483점 이상, 토플 68점 이상,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 취득자(신설19.01.11)

제57조(합격기준) 외국어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9장 종합시험

제58조(응시자격 및 응시횟수) ① 학칙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석사과정에서 1년 이상 이수하고 17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 박사과정은 박사과정에서 2년 이상 이수하고 27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 통합과정은 통합과정에서 3년 이상 이수하고 50학점 이상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한 자로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3.0) 이상인 자에 한

해 응시할 수 있다.

- ② 신학대학원 종합시험은 2년 이상 이수하고 70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수강신청자로 한다. (개정 21.02.05) (개정 23. 01.06)
- ③ 종합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하되, 그 일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 응시할 수 있으며 있다.

제59조(시험과목) 대학원별 종합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은 2과목으로 하며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의 종합시험과목은 학과가 지정한 전공과목 3과목으로 하되 세부적인 과목은 따로 정한다(개정 22.01.07)
- 2. 신학대학원 종합시험과목은 2과목으로 한다(개정 21.02.05) (개정 22.01. 07) (개정 23.01.06)

제60조(출제위원)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61조(응시료) 종합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장 학위논문

제62조(논문제출 연한) ① 학위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8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제출 연한을 넘긴 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허가할 수 있다.

-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전항의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군 입대 휴학자의 병역기간은 전 제1항의 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3조(논문제출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신앙훈련을 이수하고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2. 각 대학원에 해당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3.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된 후 논문연구계획의 승인을 받는 자로서 논문세미나를 1개 학기 이상 받은 자.
 - 4. 전 제27조의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B(3.0) 이상인 자
- ②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대학원 주임교수와 지도교수의 사유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종합시험에 재 응시한다.
 -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3. 논문제출 연한이 경과된 자가 논문을 제출할 경우 입학금에 준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논문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에 논문지도교수를 두며,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연구지도와 학위청구논문 작성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② 일반대학원의 석·박사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입학 시 논문지도교수신청서에 의해서 선정되고, 특수대학원은 입학 후 1-2학기 내에 선정한다.
- ③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2년 이상 재직한 조교

수를 원칙으로 하되, 석사과정 논문지도교수는 전임교원 중 박사학위를 소지한 2년 미만 재직 한 조교수도 할 수 있다.

④ 논문지도교수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⑤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과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학내·외 인사를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65조(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 일반대학원의 경우,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수대학원은 논문지도교수를 선정 한 후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인간대상연구의 심의) ① 논문의 내용이 인간대상 연구일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문 연구계획서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와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되지 않는 석사논문에 대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를 신청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생명윤리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절차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③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05.08)

제66조(논문작성) ① 학위논문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1종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성격은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③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교내 콜로키움을 통과해야 한다. 콜로키움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6조의2(연구윤리) ① 논문 제출자는 연구윤리를 지켜야 하며, 논문 심사본 제출과 최종본 제출 시 표절 등 확인을 위해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③ 논문 작성자는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24.05.03)

④ 논문계획서 제출 시 연구 윤리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의 유효기간에 따라 연구 윤리 교육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신설24.05.03)

제67조(논문제출) ① 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를 석사 3부, 박사 5부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와 대학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 제출 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학위청구논문 심사)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69조(논문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전 제6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과정 3인, 박사과정 5인(외부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18.02.09)

- ② 심사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하거나 호선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심사위원장은 될 수 없다.
- ③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70조(논문심사 절차) ① 학위논문심사는 내용심사와 구술심사로 실시한다(개정19.01.11)(개정 21.02.05)
 ② 내용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1.02.05)
 ③ 구술심사는 객관적인 검증을 받도록 공개로 진행하고 구술심사 후 심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1.02.05)

제71조 삭제(21.02.05)

제72조(논문심사 판정) ① 학위청구논문의 내용심사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개정 21.02.05)
 ② 논문의 내용심사는 석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분의 2이상,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은 5분의 4이상 80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합격으로 한다. (개정 21.02.05)
 ③ 논문의 구술심사는 논문 내용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1.02.05)

제73조(심사보고)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평가를 종합하여 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1.02.05)

제74조(재심사) ①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수정, 보완하여 한 학기 이상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1.02.05

제75조(합격된 논문의 제출)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논문체제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경지(하드보드) 3부(심사위원 전원의 합격판정 날인본) 및 CD 3장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논문 체제) 학위논문의 체제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청구지침을 따른다.(개정 21.02.05)

제11장 학위수여

제77조(학위수여 및 종별) ① 각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학칙이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석사학위청구논문의 제출에 갈음하여 별도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17.08.11)

제78조(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79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칙 제45조의3에 따라 석·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80조(학위수여) 학칙 제39조 제3항과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1. 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등록을 한 자
2. 전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3.0)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내용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제77조 제3항에 의한 논문 비제출자는 예외로 한다.(개정17.08.11)

제81조(학위수여자 사정) 원장은 학위수여 여부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제82조(학위수여) 학위는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수여한다.

제12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83조(학생지도) 각 대학원 학생은 규정을 준수하고 원장, 대학원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84조(포상 및 징계)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높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85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

③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진술, 증거 제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6조(장학금) ① 본 대학원의 장학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의 종류와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는 본 대학교 장학규정 제12조의 별표2에 따른다.(개정16.08.05)(개정17.12.08)(개정20.10.08)

② 본 대학원의 장학에 관하여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장학규정에 따른다.(개정17.12.08)

제87조(지급정지 및 취소) 장학금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장학금을 반환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17.12.08)

1.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개정17.12.08)
2. 휴학 또는 제적자(개정17.12.08)

3. 기타장학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여겨지는 자(개정17.12.08)

제88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학기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복학생
2. 재입학생
3. 편입학생

제89조(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장 공개강좌, 연구생

제90조(공개강좌) ① 학칙 제75조에 따라 원장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이수증 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개설시 강좌의 주제, 기간, 수강정원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91조(연구과정 및 연구생) ① 학칙 제75조의3에 따라 연구과정 입학자격을 있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비학위과정으로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와 전형을 거쳐 합격할 경우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요건은 전 제6조에 따른다.

③ 연구과정의 전형방법은 석사과정에 준하며, 선발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연구과정으로 합격한 자(이하 “연구생”이라 한다)는 전 제21조 제6항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연구생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전체 등록금액 중 입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도록 한다.

⑤ 연구과정의 연구 분야와 수강신청, 출석, 휴학, 제적, 퇴학 등 학사에 관한 기타사항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⑥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연구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 총 12학점 이내로 한다.

⑧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대학원별로 정한 정규등록을 마쳐야 한다.

⑨ 특수대학원의 경우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가 정규과정에 입학한 경우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⑩ 이수자에게는 학칙 제75조의3 제2항에 따라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⑪ 연구생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91조의2(산학교류연구생) ① 학칙 제75조의3에 따라 본교 산학교류협력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해 청강을 허락할 수 있으며, 청강생을 산학교류연구생이라고 한다.

② 제1항의 본교 산학교류협력기관에 소속된 자는 본교와 산학교류 계약을 맺은 기관, 본교 부설기관, 수탁기관의 직원 및 한국성서선교회 소속 교역자로 한다.

③ 산학교류연구생 선발은 소속 대학원 주임교수의 추천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한다.

④ 청강 허락은 기관당 1~2명, 학기당 1~2과목으로 하며 연구생의 수업료는 받지 않는다.

⑤ 산학교류연구생은 수강과목의 모든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3주 초과 결석 시 청강을 철회

할 수 있다.

⑥ 산학교류연구생의 학점 취득은 불가하며, 연구생의 요청 시 청강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⑦ 산학교류연구생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0.05.08)

제14장 직제와 위원회

제93조(직제) 각 대학원의 직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4조(주임, 지도교수) ① 각 대학원에는 학사를 담당할 대학원 주임교수를 둔다.

② 각 대학원에는 학생 개개인의 연구지도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95조(대학원위원회) ① 학칙 제72조의2에 따라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에 대한 것은 학칙 제72조의2, 제72조의3, 제72조의4에 따른다.

제95조의2(서면결의) 대학원위원회를 포함하여 각 위원회는 부득이 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신설 21.02.05)

제96조(대학원운영위원회) ① 일반 및 특수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를 두며,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각 대학원의 현안문제를 심의한다.

② 일반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운영위원회와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운영위원회는 각각 대학원장, 교학처장, 대학원 주임교수, 분야별교수(3명)로 구성하며 간사로 교학팀장을 둔다.(개정17.08.11)

③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교학처장, 대학원 주임교수, 기타 추천교수(2명)로 구성하며 간사로 교학팀장을 둔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4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7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9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0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제27조 1항, 2항 및 제38조 제1항의 개정 사항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1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2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3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2.(경과규정) 제2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보육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으로의 개정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24학년도 입학자 중 1차 입시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요건을 갖춘자는 4학기제로 졸업이 가능하다.

부 칙

1.(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개정16.08.05)